

(주)두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4. 04

DOOSAN

목 차

제 1 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개요 3
- 2. CP 구성요소 5

제 2 절 공정거래법

- 1. 공정거래법 개요 8
- 2. 협력사 및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9
-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3
-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20
- 5. Q&A 32

제 3 절 하도급법

- 1. 개요 40
-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48
-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6
- 4. 위반시 제재 96
- 5. 하도급거래 관련 Q&A 101

제 4 절 대규모유통업법

- 1. 개요 108
-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111

제 5 절 대리점법

- 1. 개요 121
- 2. 대리점법 상세내용 122
- 3. 제재사항 133

제 6 절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처리 절차

- 1. 공정위 조사절차 135
- 2. 공정위 심판절차 136
- 3.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37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개요

1.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두산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두산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한다.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의 필요성 및 목적

1.2.1 필요성

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 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③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회사는 자율적 준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 ㈜두산의 CP 추진 실적

연도	주요내용
2004년	CP 도입 선포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최초선임 : 이태희 부사장)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정
2005년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이태희 부사장 → 조용만 상무)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차 개정

2009년	CP 등급평가 실시 (A 등급)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2차 개정
	CP 등급평가 실시 (BBB 등급)
2012년	기업 철학/문화(Doosan Credo) 공표
2013년	Doosan Credo Credo에 준법 및 동반성장 의지 표명
	Credo 내용 사업장 게시 및 임직원에 가이드북, 핸드북 배포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 정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위반 임직원 제재기준 추가)
	협력사 CP도입(5개사) 지원 선포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3차 개정
	임원 및 팀장 대상 공정거래 특별교육(14명)
	하도급거래 모니터링 실시(지속 운영 중)
	자율준수 Checklist(가이드) 배포
2014년	공정거래 Council (사업부 담당자간 협의체) 운영
	두산그룹 윤리규범 정비 (Code of Conduct)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업무지침 제정)
	내부거래 모니터링 실시 (지속 운영 중)
201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4차 개정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조용만 부사장 → 박완석 부사장)
	하도급거래 Guide Book 제작 및 배포
	(주)두산 공정거래 Workshop 실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인센티브 규정 추가)
2016년	내부거래 Guide Book 배포
	공정거래 Q&A 집 발간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5차 개정
2018년	대리점법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하도급거래 가이드북 개정 및 배포
2019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4대 실천사항 도입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박완석 부사장 → 김윤건 전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권한 등 일부 개정)
	협력사 자료관리 System 구축
	대규모유통업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6차 개정
2024년	기술자료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및 매뉴얼 배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주관부서 변경 등 일부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7차 개정

1.4 두산의 CP 규정

(주)두산은 CP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CP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한 세부지침을 적용,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규정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 세부 지침

- ①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 ③ 감사(모니터링 제도) 운영 지침
-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서관리 운영지침

2. CP 구성요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P의 구성요건, 평가기준, 모범적 설계 기준 등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중에 CP의 구성요소로 아래의 8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2.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2.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2.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 편람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 되어야 한다.

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반기 1회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2.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 공정거래 위원회 소개]

- 1) 기구 및 조직 (2023년 3월 기준)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 2) 소관법률 현황
 -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 일괄정리법(삭제), 대리점법
 -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 3)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

기능	정책분야	주요 내용
경쟁 촉진	경쟁정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거래사의 편취 등 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거래정책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
-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
- 위원의 임기(3년)·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 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공정위 결정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

제2절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 개요

1.1 공정거래법 구성

- 정식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총 15장 130조로 구성
- 주요 내용
 -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사항)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④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⑤ 사업자단체
 - ⑥ 전담기구 및 조사 등의 절차
 - ⑦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적용 제외

1.2 (주)두산 관련 조항

1.2.1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
 - 두산그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음.
 - 분기별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의 의무가 있으며, 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비상장사공시의무가 있음.
- ② 회사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매각 등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만 함.

1.2.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규제를 받음

1.2.3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 불공정행위의 금지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⑥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⑦ 기타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주)두산은 해당됨)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협력사 및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2.1 개요

- ① 협력사 및 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② “우월적 지위남용”이란
 -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협력사는 거래를 계속하지 못하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④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협력사 혹은 대리점이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여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2 유형

2.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1) 주요 내용

- ① 협력사에 대해 두산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상세 내용
 - 부당하게 협력사가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협력사에게 두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산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금지이유

- ① 협력사와 거래 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사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두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사가 구입하는 제품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협력사(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상세 내용

- ① 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써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②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③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④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⑤ 두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⑥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⑦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2.2.3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특정 협력사에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부당하게 협력사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상세내용

-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된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지급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 ②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2.2.4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협력사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거래강제 행위'의 상세내용

- ①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사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3) 법 위반 유형 (Don'ts)

- ① 인기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같이 구매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 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2.3 관련사례

<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 에게 지원금 또는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한 지원금 전액 반환,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위반한 대리운전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 1.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심인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조항을 적용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은 과징금 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4 제재내용

2.4.1 행정적 제재

- ① 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 ②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4% 한도 내에서 부과하되,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내에서 부과 (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2.4.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1. 주요내용

-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 ②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분야이다. 적발이 어려우므로 담합에 참가한 내부자들의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과정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3.2. 성립요건

3.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①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한다.
- ②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 ③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3.2.2. 경쟁제한성 존재

- ① 경쟁 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주의 하여야만 한다.

3.3. 합의추정제도

- ①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②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예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예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예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㉔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 인정되는 경우
 - <예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예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㉕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예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예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르면서도 가격 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예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③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3.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3.4.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 법 위반 유형(Don'ts)

- 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②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④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3.4.2. 상품의 생산, 거래 혹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2) 법 위반 유형(Don'ts)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 ②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3.4.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 위반 유형(Don'ts)

- 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②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③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4.4. 관련 사례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사실관계]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등에서 사전에 선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

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판단]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사실관계]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세기 아케마, 동성하이켄, 가야쿠 약조 코퍼레이션,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약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으로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013부사0983, 의결 제 2013-202호)

[사실관계]

7개 사업자(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다음날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 ~ 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5. 위반시 제재

3.5.1. 행정적 제재

- ①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3.5.2. 형사적 제재

- ①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② 양벌 규정(제128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3.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①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 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6. 업무 시 유의사항

3.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찰에 참여할 것

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동종업체 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3.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 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 ②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아니된다.
- ③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고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 oo일자 oo일보, XX Consulting 회사, 영업사원별 추정 취합자료 등)

3.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표현하여야 한다(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 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④ 업계모임에서 참석한 이후 작성하는 회의록 등에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한 의견개진 사항 등을 협의한 것처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

모임명	
모임의 목적	
예상활동내용	※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간사	
참여회사 (협회 등 포함)	
회합주기	
활동내용보고 여부 및 방법	
담당부서(팀)	
담당자(연락처)	
특이사항	
<p>위 내용과 같은 업계모임을 참여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소속부서장 (서명)</p>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4.1.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관련 조항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입거래의 경우 내부거래 Process에 따라 유관부서의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4.1.1. 개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결권 유무는 무관(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음)하며, 직접보유하고 있는 지분만을 기준으로 한다. (간접지분은 반영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동일인이 회사나 조합인 기업집단)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포스코, KT 등
- (주)두산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4.1.2. 위법성 판단기준

(1) 부당성

공정거래법 제4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상당성

상당히 유리한 조건: 실재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50억원 이상 상당한 규모의 물량 (평균매출액의 12% & 200억원 이상)

4.1.3. 위반 유형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① 주요내용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한다.
-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2) 사업기회제공

① 주요내용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 IT, 물류, 광고, 건물관리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며,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다.

② 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①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② 안전지대 관련 사항 (※두산은 해당하지 않음)

거래 상대방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1.4. 적용제외

거래목적달성(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적용이 제외된다.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① 개념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유의사항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① 개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 유의사항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① 개념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② 유의사항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 급변이나 금융 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 응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 필요"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1.5. 계열사와 거래 시 사전 검토 사항

- ①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한다(수의계약의 필요성)
- ② 수의 계약은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한다
 - ※ 정상가격이란 두산이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 ④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Issue가 있으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

4.1.6. 관련사례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계열사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기업집단 태광, 2016제감3225)

[사실관계]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사는 합리적인 검토나 비교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부터 김치, 와인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였다. 지주회사 격인 「태광」 경영기획실은 그룹 시너지의 일환으로 와인거래를 활성화하도록 기존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을 와인으로 변경하였고 메르뱅 와인의 구매 및 실적보고를 지시하고, 티시스는 경영실적 개선을 계열사로부터 취합한 수량을 기초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거래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하였다.

[공정위 판단]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현대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의결 제2016-189호, 2014서감1689)>

[사실관계]

현대증권은 2010년 본사용 복합기 임차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록스와 직접 거래하였고 지점용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1. 12. 27. 제록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하고 HST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변경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 현대증권 주식회사는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티와 복합기 임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2. 일반부당지원행위

4.2.1. 정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4.2.2. 위법성 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①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특수관계 없는자 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추정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지원의도가 엇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상가격 판단 기준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의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가)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나)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 (다)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 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 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2)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

① 개념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 상당성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③ 부당성

(가)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업무상 유의사항>

단순한 사업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2.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

① 유형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 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 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등을 포함된다.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② 판단기준

“정상금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된다.

(2) 자산 지원

① 유형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저가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고의로 늦게 받는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 하도록 한 경우

② 판단기준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상품 및 용역 지원

①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 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② 판단기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① 유형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
- 거래과정에서 추가된 회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

② 유의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을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4. 관련사례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 건, 2015시감2699, 의결 2017-174호)

[사실관계]

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이하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보험료 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 기한 장기설정,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저가매각 등의 지원행위가 존재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① 파운텍의 설립초기 피심인들이 매입하여 바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은 파운텍 자본금 4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 ② 피심인들이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전체 공장설비 중 91.5%(2005년 6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지원행위로 인해 파운텍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2004년 ~2011년) 동안 매출액이 약 7,600% 가량 급성장하였다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액 총 합계액(약 15억 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파운텍 영업이익 합계액(약 226억 원)의 약 6.6%, 당기순이익 합계액(약 152억 원)의 약 9.9%에 상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파운텍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향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며, 피심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파운텍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래실질 상 편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마. (1)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사례, (삼양식품의 부당지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고,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 5. 31. 부터 2011. 3. 28. 까지, 그리고 박○○은 2011. 3. 29. 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 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개별 정상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2013두4255)>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
(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 건, 2012서감1294)>**

[사실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4.3.1.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49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50조의 2항,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지원금액*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산정기준
일반부당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50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받은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정거래법 제50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47조 제1항.3항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이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 금액으로 본다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3.2. 형사적 제재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하였거나 사익 편취 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경우(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제4항)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법 제124조).

4.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

5. Q & A

5.1. 공정거래법 일반

(1)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 ①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 ③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동일인'이라 함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룹의 '총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2) 특수 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

- ①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동일인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동일인 관련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사실혼 포함), 혈족6촌, 인척 4촌),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3)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법은 민법, 상법 등 대등한 경제주체를 전제로 일반적 법률 관계 규율을 위한 법규와 다르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타 법규와의 적용 범위가 중첩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① 다만 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공정거래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타 법규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개의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요건만이 아니라 타 법규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5.2. 내부거래 중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1) 일감 몰아주기(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란 무엇인가요?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 법규에서 지정한 구체적인 위반 유형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2)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사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규제의 대상회사들이 됩니다. 향후 지배구조 변동,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관련 회사들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일감 몰아주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열사와의 거래 시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부서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Compliance팀 등)

(4)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 ①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 ②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 즉,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가격을 분석하고 경쟁사 등과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하여 가장 최선의 거래처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하고 수의계약인 경우 검토결과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검토 내용 등을 품의서 등에 기재하여야 향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5)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 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따른 내용이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 제 45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1항의 9호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에 따른 규제로 각각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를 규제하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검토나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와 거래를 하여도 상품가격이 정사가 수준인 경우 부당지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거래가 적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거래 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지대'와 관련된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4번째 항목인 합리적인 검토와 비교 없이 거래하는 건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두산 내 BG와 특정 계열사간의 거래규모가 200억 미만일지라도, ㈜두산 전체 합산 시 200억을 초과할 수 있으며,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부당지원의 Issue가 있습니다.

(7) 공개입찰 등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규모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 당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하더라도 독립거래주체로 판단하므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9) 계열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조건보다 1개월 정도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부당지원에 해당하나요?

-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지원의 방식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대금지급조건, 납품조건 등에서도 비 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열사를 지원할 의도가 명백하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합니다. (품의서나 담당자간 주고받은 E-mail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10) 해외자회사 (당사의 중국생산법인)의 직원들을 국내 사업장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비용은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 등에 해당하나요?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은 국내 법인에만 해당하므로 중국생산법인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또한 중국생산법인의 임직원의 역량이 당사에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고,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는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1) 두타몰이나 두산베어스 등에서 상품권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나요?

- 회사가 업무상이나 직원 복리후생상 필요에 따라 정상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3. 부당 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나요?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등 공정거래법 제4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⑤ 생산 또는 용역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⑥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⑧ 입찰담합행위
 -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즉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 이러한 부당공동행위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1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부당공동행위(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됩니다.

②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 경쟁 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 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3)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라 하며 이 경우 제반 정황으로 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됩니다

(4) 사업자들끼리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요?

-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됩니다.

(5) 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한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경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됩니다.

5.4.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 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거래 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됩니다
- 기타의 거래거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차별적 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 ① 가격 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 ④ 집단적 차별취급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량 구매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가격차별이라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동일규격 상품을 단독으로 거래하는 업체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하나요?

- 주거래처와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 간의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경쟁사업자 배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 공정거래법 상에 명시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 염매

- 자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부당 고가 구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6)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무엇인가요?

- 부당한 고객 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하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7) 「거래 강제」란 무엇인가요?

- 거래강제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 대비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8)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9) 구속 조건부거래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배타 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10) 사업활동 방해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이 있습니다

제3절 하도급법

1. 개요

1.1 하도급거래의 기본개념

- ①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음)
- ② 하도급법은 양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행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나 수위탁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③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④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1차적인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1.1.1 적용 거래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 두산은 제조, 용역, 수리 위탁 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 여부는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조 위탁

(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 등에 기재한 영위업종이나 정관상 기재된 사업목적 등을 참조)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이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한다.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한다.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키거나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 됨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을 말한다.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한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한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한다.

(2) 제조위탁의 유형

① 유형 1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된다.
-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 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한다.

② 유형 2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유형 3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 ①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해당 여부 확인
 - ①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 ②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 ③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격품·표준품 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다.
 - 수입한 Chemical 제품에 당사가 지정한 첨가제를 투입하여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 제품을 당사가 주문한 기준에 따라서 단순 소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 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①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②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 위탁하는 경우
 - ③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1.1.3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주두산은 이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②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2) 역무의 공급 위탁

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1.1.4 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1) 수리위탁

① 개념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형

- 유형1: 물품의 수리를 도급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유형2: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 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유의사항

-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 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수리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 경우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설위탁

① 개념

-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1.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① 개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 단,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 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②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건설 45억, 제조/수리 30억, 용역 10억이상)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 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보호대상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2016.1.25시행)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대기업, 중견기업) • 30억 이상 중소기업자(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중소기업 •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중견기업(2조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중견기업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관리 및 대응이 용이하다.
- 해외기업의 한국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 해외기업의 한국지사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것인지, 수입품인지 여부의 확인)
- 두산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두산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두산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1.1.6 법적용 대상 기간

- ①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하도급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의미하며,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1.2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1.2.1. 개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1)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2) 하도급법 제 13조의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하도급법 제 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 발주자의 의무사항

1.3.1. 개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법이지만, 발주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회 이상의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 3조)

(1) 주요내용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서면의 종류와 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발주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발주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 기본계약서에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주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한다.

- ① 서면미발급의 정당한 이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②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부속된 하도급계약도 포함된다.
(예시: 사출관련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형 금형 제작)
- ③ 서면발급의 기준은 양사의 기명날인이 된 시점으로 한다.
 - 발주시점에 원사업자가 전자계약서를 송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내용의 제작 등을 개시한 이후 전자서명을 한 경우, 서면을 지연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④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 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구두 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체결 또는 발주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인지를 기재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㉞)두산은 긴급발주양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한다.

[위탁시 기재사항]

-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 후 공급원가 변화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용역위탁시 서면내용시 주의사항]

①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 제3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지 정보성과물의 품목, 종류,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이다. 제3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할 위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를 넘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3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락시키는 것(부분적으로 양도·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②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 제3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술자의 기술수준별로 작업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산정방법을 정한서면과 제3조 서면이 다른 경우에는 이 두 서면의 상호 관련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 후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산정근거가 되는 수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제3조의 서면 형식으로 재 발행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B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수급사업자가 작성에 충당한 실비(교통비, □□비, ▲▲비)

③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 제 3 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당초 서면의 교부
(가)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용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당초 서면에 기재할 「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년○월○일」, 「발주 후 ○일」로 기재

(나)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 기재사항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보충서면의 교부

(가)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여는 상호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의 ○○문서의 보충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당초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며, 서식·내용은 불문한다.

- 「가단가」에 의한 발주

(가)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 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나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 하여야만 한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 단가를 기재한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면 사전 교부 예외]

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위반 사항(Don'ts)

- ①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발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②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서면 지연 교부)
- ③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④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 서면발급에 해당함.

(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하도급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 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 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한다.

(5) 주의 사항

- ① 하도급법에서 인정하는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 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② "서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한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발급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 등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⑤ 변경계약서와 변경내용 통지서는 다른 서면이므로 2가지 서면이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 ⑥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 미발행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 ⑦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발주서 등으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 사항(검사기준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 ⑧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대금을 월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함.

[발급서면의 종류 리스트]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거래개시 (제3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과정 (제8조-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 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14개 유형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서면 보존 대상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5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6) 관련 사례

<삼성중공업의 서면 지연발급 건(2020년 4월 24일 보도자료)>

[사실관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하므로 삼성중공업은 System 상으로만 사전발급의 형태일 뿐 실제로는 지연발급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2535등)>

[사실관계]

농협정보시스템은 2014.7.1 ~ 2016.4.30. 기간 동안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 47건의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6일~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한솔인티큐브는 2014.1월 ~ 2016. 4월 기간 동안 63개 수급사업자에게 00구축개발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발주서)을 발급하였다. 한화에스앤씨는 2014.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8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사업 및 정보통신공사 등을 용역 또는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 또는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1일~10일 경과하여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시큐아이는 2013. 3월 ~ 2016. 4월 기간 동안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0일~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에 따른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업자는 서면을 공사 착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하였음을 판단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였다.

2.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하도급법 제 9조)

2.2.1. 주요내용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목적물을 수령일은 검사를 요청 받은 날을 의미한다.
(IT Project 등은 검수요청일을 적용)
 - ②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합격/불합격의 결과만 통지하는 것은 불완전 서면교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불량원인이 불분명하여 재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불량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재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시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검사 후 인수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2.2.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 검사의 방법
 - ①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정당하지 않은 사유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재검 등으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차 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재검 실시 등)을 통지하고 재검을 진행하여야 함.
-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 ERP 등의 System을 통하여 검사요청이 들어온 경우 System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IT 용역 등의 경우 검사요청 후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반려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불합격 처리없이 미흡사항의 보완요청 후 최종완료시 합격처리하는 경우는 검사기간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다.

2.2.3.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발주한 제품이 공장 등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단, 지적 성과물 등에 대한 용역위탁의 경우 검수요청일을 의미한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 검사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다 등으로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 품질검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어야만 한다.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감액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특약 등이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4. 관련 사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건 >

(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 2014부사1642)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

<검사 결과 서면 미통지 >

(대진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건, 2012서제0967)

[사실관계]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안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

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3. 하도급대금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3조)

2.3.1 주요내용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이 된다.
- 민사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재검 등으로 검사결과가 확인이 늦어지거나, 협력사의 잘못 등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 거래가 비번하고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2.3.2 지연이자 및 수수료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현재 연 15.5%)를 적용한다.
- 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 수수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담보부대출 등)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수수료(은행과 적용하는 약정할인률)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적용 방식

- 목적물 수령일: XX년 3월 31일
 - [Case 1]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5월 30일)
 -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발생 (정상지급)
 - [Case 2]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6월 20일)
 - 지연이자 미발생 (지급일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20일임)
 - 지연수수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발생 (21일분, 5월 31일 ~ 6월 20일)
 - [Case 3] 6월 1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6월 30일)
 - 지연이자 발생 (5월 31일~ 6월 10일)
 - : 지연대금 X 15.5% X 11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 지연수수료 발생 (6월 11일 ~30일)
 - : 지연대금 x 은행약정 할인률 x 20일/365일
 - [Case 4] 6월 10일 현금지급
 - 지연이자 발생 (5월 31일 ~ 6월 10일)
 - : 지연대금 X 15.5% X 11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2.3.3 범위반 유형(Don'ts)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매입일을 목적물로 수령일로 하여 60일째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3.4 업무시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게 된다.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3.5 관련사례

<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

[사실관계]

브이엘엔코는 2013.10.7. ~ 2014.2.6.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8종의 골프의류(스커트, 바지) 총 123,400개를 제조위탁하였는 바, 수급사업자로부터 골프의류 8종을 2014.1.31. ~ 2014.3.31. 까지 총 121,894개를 납품받았고, 해당 하도급대금 2,273,451천원을 2014.2.20.부터 2014.4.18.까지 총 3회에 걸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불량제품을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4.4.18. 지급한 총 1,076,284천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2014.6.17.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만기일인 2014.6.30. 에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브이엘엔코가 납품 받은 제품들은 자신이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과 검사업체로부터 합격 받은 제품을 납품 받고 나서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취소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점에 비추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90,990천원), 한화에스앤씨(2,262천원), 시큐아이(12,106천원), 농협정보시스템(41,187천원)

[공정위의 판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및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사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

2.4.1 주요내용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

- 제조·수리 또는 용역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데,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한다.
이 경우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된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2.4.2 조정기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하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2.4.3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2.4.4 업무 시 유의사항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선발주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는 경우 위법이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하다.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이다.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적용 받았다면 물가 조정에 따른 대금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률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4.5 관련 사례

<롯데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건하1013)>

[사실관계]

롯데정보통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주 수완쇼핑몰 중 약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의 판단]

롯데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감소의 사유로 금액조정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사에게 단기 11일부터 장기 285일까지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3건하1015)>

[사실관계]

케이티디에스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010년 ICIS 요금분야 기능개선' 등 12건의 용역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의 판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5.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하도급법 제16조의 2)

2.5.1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 혹은 수급사업자를 대신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5.2 법 위반 유형(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2.5.3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조정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을 작성, 상호 기명날인(혹은 서명)등을 하여 유지한다.
- 협의 시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실무자 혹은 팀장급이 참석하여야 한다..

2.6. 선급금 지급의 의무(하도급법 제6조)

2.6.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6.2 범위반 유형(Don'ts)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2.6.3 업무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이다.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지급 시기는 적절한지,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6.4 관련사례

<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5부사2592, 제2016-123호)>

[사실관계]

케이에이치피티는 2012.6.14. 및 2013.9.4.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2.6. ~ 2014.3.24.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케이에이치피티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7.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2.8.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하도급법 제 7조)

-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하여야 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①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
 - ①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않은 경우
 -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 내국신용장을 월 1회 이상 일괄 개설하기로 합의한 날에 개설하더라도 적법함
- 위반유형 : L/C 미개설, 지연개설행위

2.9.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 의무(하도급법 제 13조3)

2.9.1 주요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9.2 공시 주체

- 1)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 2) 공시대상기업집단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2.9.3 공시해야 하는 사항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 타	계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소 계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소 계
지급 금액														
비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현금결제비율											⑮			
현금성결제비율											⑯			

- 현금결제비율: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 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①+②+⑥)
- 현금성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 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①+②+③+⑥+⑦)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 지급기간: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 인수일, 용역위탁: 용역수행종료일,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날을 의미)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비중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여부, 담당부서/연락처, 분쟁조정 신청절차/방법과 소요기간

-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부서 내에 설치한 경우는 분쟁조정기구로 인정되지 않음

구분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X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비고	

2.9.4 공시시기 및 방법

- 1) 공시대상원사업자는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 상반기 공시 : 당해연도 8월 14일까지
- 하반기 공시 : 차기연도 2월 14일까지

- 2) 공시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이용하여 공시양식을 제출한다.

2.9.5 위반시 제재

1) 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시의무 이행,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공표를 명할 수 있음.

2) 과태료 부과 (하도급법 제30조의 2, 하도급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위반유형			과태료 (단위: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나. 공시한 경우	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50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조)

3.1.1. 주요내용

(1)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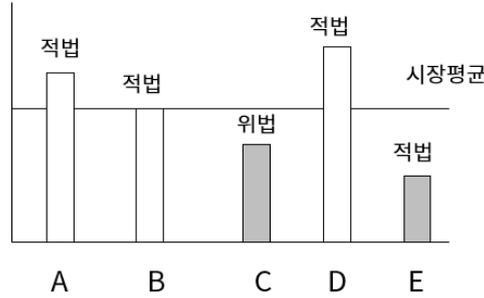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준은

①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② 부당하게 정하는 경우이다.

- 따라서 단순히 정상가격보다 낮게 결정에 되었다고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가 결정과 하도급법 위반 여부]



- A.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상회
- B.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수준
- C.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 이하
- D.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상회
- E.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결정, 시장평균가 이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영을 압박하게 되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을 규제하고 있다.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한다.
통상대가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 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한다.
※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 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유형

-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3.1.2.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하게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1.3. 범위반 유형 (Don'ts)

[공정위 심사지침의 유형별 예시]

유형	예시	특이사항
'부당하게'	21	단가, 수량 지연확정, 임시단가를 사용한 인하, 허위정보의 사용, 추가비용 미보전 등
일률적 단가인하	7	원자재가격 인하 등 사유는 타당하나 가공비항목에서 일률적으로 인하 시 위반
일정금액 할당	3	
차별적 취급	1	지정한 운송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불허
거래조건 착오	4	마치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 처럼 언질...
일방적인 단가결정	6	위탁 후 단가 결정시 제조원가 초과는 위법
경쟁입찰시최저가 이하 단가 결정	3	예정가 초과시 재입찰 미고지시 위법
부당한 부담 전가	3	

[부당한 방법의 예시]

1. 납품시점에 대금/수량을 미확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방식

- (1)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 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 (3)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 때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2. 임시가격 등을 가격인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 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3)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3.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행위

- (1)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 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 (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4. 가격 결정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 (1)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및 시행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5. 기타 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방식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 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3)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 (4)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 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 (6)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8)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사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 (9)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 (1)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4)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 (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6)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7)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일방적으로"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수급 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견적 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 등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4)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6)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거래조건의 착오]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 (1)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2)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취 단가를 낮게 책정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법 제4조 제2항 제7호(최저가 입찰에서 가격 인하)에서의 정당한 이유의 예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의 예시>

- (1)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 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경우
- (2)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계약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 (3)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주의사항]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여도,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1.4. 업무상 주의 사항

- ① 입찰이 아니면 입찰이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됨. 최종 견적서를 첨부할 것 (일방적인 결정 후 통보로 오해될 수 있음)
- ② E-mail 등의 당사의 예산이 XX임,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오해될 수 있음
- ③ 하도급업체의 영업이익률 등을 관리(?)하여서는 안됨.
 - 해당 하도급업체가 당사와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함.
- ④ 당사의 원가절감 계획은 특정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고 인하 단가를 제시하여 작성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만 함.
 -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은 XX이므로 XX로 조정한다 등의 기준이 있어야만 함 (Bidding을 통한 단가인하, 생산안정화 및 물량 증가로 공수감소 반영 등은 인정되지 않음)

3.1.5. 관련사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2020년)>

[사실관계]

-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정 추가 공사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수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다.

- 시수(時數, MAN-HOUR) :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하여 정해짐.
- * 원단위(품셈): 한단위 수량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준 시간
- 시수계약 : 하도급대금 = "시수(時數)"(변수) × "임률단가"(상수)
- 예) 임률단가를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어떤 작업 물량이 '10시수'일 때 하도급대금은 100,000원이 된다.

-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회사의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서는 수정/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 대우조선해양은 이것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알려지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며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수정/ 추가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 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공정위 판단]

- 대우조선해양은 수정 . 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 따라 기성 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 .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

(두산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4제하1858, 제2016-051호)

[사실관계]

두산중공업은 2011.11.1. ~ 2013.10.30. 기간 동안 발전플랜트, 환경설비 등의 관련 부품 117개 품목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82개 수급사업자들의 최저입찰가격이 두산중공업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두산중공업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원가절감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추가입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을 결정하였다.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 (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

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는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2020)>

[사실관계]

-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공수(실제 투입 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원인 부서, 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 생산 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다. 또한 원인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없이 추가로 삭감되었다.
 -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 * 실제 투입 공수 대비 인정공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삼성중공업은 50% 내외의 능률을 적용함

[공정위 판단]

- 삼성중공업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금은 '공수'와 '직종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되었다.

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3.2.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2.2 범위반 유형(Don'ts)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3.2.3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해당 자재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하다.
- 거래시 거래사유 및 거래대금은 적정한지 확인한다.
- 거래 과정에서의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3.3.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 8조)

3.3.1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임의 취소, 변경이 금지된다.
 - ① 위탁 임의 취소/변경 금지
 - ② 수령/인수 거부 또는 거부 금지. 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①, ②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의 위탁을 한 후 임의로 용역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3.3.2 판단기준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
 -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발주취소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3.3.3 범위반 유형(Don'ts)

-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작업해야 할 후속단계가 지연되는 경우
- 무리하게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일정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사정(판매부진, 공간부족, 경영상황악화 등)을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3.4 업무시 유의사항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한다.

3.3.5 관련 사례

<납기 이후 위탁취소 사례>(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2제하0213)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 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주 건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연수령이 되었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하며,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전산시스템으로 동의를 이루어졌을지라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이를 형식적인 동의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목적물 지연 수령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6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사례>

(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2014부사1642)

[사실관계]

그린조이는 ① 2010.8.18.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② 2013.9.27. ~ 2013.11.15. 기간 동안 2014년도 봄과 여름에 판매할 남성 및 여성용 골프복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10종의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는 바,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납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3.12.10. 수급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그린조이는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과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납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린조이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4.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3.4.1. 주요내용

-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3.4.2. 범위반 유형(Don'ts)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3.4.3. 업무상 유의사항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4.4. 관련 사례

<과다발주를 이유로 반품한 사례>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09하개1116)

[사실관계]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 받은 후, 납품 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 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3.5.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3.5.1.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된다.
-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5.2. 판단기준

-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한다. 즉,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의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 ① 감액의 사유와 기준
 -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③ 감액금액
 - ④ 공제 등 감액방법
 - ⑤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5.3. 법위반 유형(Don'ts)

-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함을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혹은 발주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3.5.4. 업무 시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계약서상의 작업내역과 실제 작업한 내역에 차이가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금,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 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이므로 감액에 해당될 수 있다.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된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감액에 해당될 수 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 회신이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일방적 통보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감액하는 항목 및 품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XX 외 20개 등”이나 “총액 00원”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반품가능기간 (입고 후 10일)이 경과한 이후 반품하는 것은 부당한 감액이 된다

3.5.5. 관련 사례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0부사2816)

[사실관계]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

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 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단가인하 합의 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88,430천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4,000천원)을 부과하였다.

<아산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2부사4421, 제2014-125호)

[사실관계]

아산성우하이텍은 ① 2010. 8월~2012. 6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104개 종류의 자동차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총 6,888,3623개(입고수량)의 부품을 납품(총 하도급대금 9,892,122천원)받았으나, 자신이 생산공정에 실제로 투입한 수량에 해당하는 6,820,354개에 대한 하도급대금(2,522,655천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품 68,008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116,508천원)만큼 감액을 한 사실이 있다. ② 목적물을 납품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공급자용) 총 1,347장을 교부하였으나, 그 중 301장만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서 납품수량 등을 확인 받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 총 1,375장 중 28장에 대하여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아산성우하이텍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일 납품 받은 후, 월말에 1개월여 동안 납품 받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납품 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품 받은 수량 중 자신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사업자와 계약해지를 위한 정산작업 결과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 총 1,347장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74장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도 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총 1,375장 중 28장에 대하여 서명을 누락하여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제8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 과징금(2억 2,8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대위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건 (제2017 - 223 호 2017. 6. 28)>

[사실관계]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총 2,692건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2,309건에 대한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켰는 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인이 불분명하여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3.6.1. 주요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2. 범위반 유형(Don'ts)

-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3.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2)

3.7.1. 주요 내용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요구 등은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3.7.2. 범위반 예시

-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
- ①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실 납품 수량 대비 5%를 손실(Loss)분으로 무상 입고하도록 한 행위
- ②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및 위탁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행사비용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3.7.3. 업무상 유의사항

- 계약된 목적물 외의 물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상 이익 강요에 해당함 (박스, Pallet 등을 요구하는 것도 해당됨)
- 품질 Loss가 발생한 건에 대한 손실보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에 정량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품질 불량 등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

3.8. 기술자료제공 요구 등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3)

3.8.1. 주요내용

(1) 개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③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⑤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⑥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세부행위 및 위법성 판단기준

-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대상행위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 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허용 등을 포함],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는다.
- ②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공정위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원사업자가 신제품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 원사업자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계약 시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공정위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허가나 신고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다른 부속품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외형 도면 및 수치만 필요함에도 원사업자가

-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품 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부품 승인에 불필요한 상세 기술자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3.8.2. 기술자료의 범위 (공정위 예시 기준)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2)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 (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 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3.8.3. 범위반 유형(Don'ts)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합의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제 3자에게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법정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행위

3.8.4. 업무상 유의사항

- ① 협력사 자료요청 System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서면 미발급 위험을 예방
- ② 협력사의 노력이나 Know-How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술자료로 간주
 - 기술적 가치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음.
- ③ 공동개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절차가 있어야 함.
 - 협력사는 기술자료 고지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④ 품질개선대책서, 물성Test 결과 등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항목들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3.8.5. 관련사례

<기술자료 유용-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8제하0053)

[사실관계]

현대건설기계는 2017. 11. 13. 수급사업자 ○○ 및 ○○○○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하네스 3개 품목의 제작도면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전자우편으로 요구하여 2017. 11. 13.과 2017. 11. 14.에 각각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는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하네스 품목의 원가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인 ○○, ○○○○ 등의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경쟁사업자에게 건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전선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접촉하면서 2017. 10. 31.부터 2018.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존에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인 ○○, ○○○○, ○○○ 전장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거래교섭 중인 △△전선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휠로더 신규 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인 ○○정공의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해당자료는 납품 품목의 외형 및 수치,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해당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 선정목록, 세부 부품의 수량·소재·도면, 각 세부 부품 간의 결합위치, 해당 품목의 완성도 평가 등을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 등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물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로 인정되며, 현대건설기계측 이 주장한 기술자료의 공동소유 및 현대건설기계가 제공한 Spec을 단순 작도한 도면이며 현대건설기계는 회로도 등의 더 가치있는 도면이 있으므로 기술자료의 유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동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노하우로 도면화되었으므로 더 상세한 도면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므로 서면미발급 및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함.

<기술자료 유용- (주)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서제3811)>

[사실관계]

(주)한화는 신고인과 공동개발방식으로 스크린 프린터설비를 개발하던 중 자체개발로 변경하고 신고인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장비를 개발하였다.

(주)한화는 신고인이 제공한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내부 자료 등에도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현재 아산 공장에 있는 SCM-14D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해당 자료를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장비의 제원, 구현방식 등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현대건설기계측은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프린터 개발에 참고 또는 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여 필요한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사용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해당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

3.9.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3.9.1. 주요내용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3.9.2. 업무시 유의사항

기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었으나(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등), 하도급거래 현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유 및 가용에 의하여 자신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대물변제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3.10.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정위가 고시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10.2. 공정위에서 고시한 요구가 금지된 경영상 정보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 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10.3. 법위반 유형(Don'ts)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공정위가 고시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요구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음)

3.10.4. 업무시 유의사항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영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장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품질 Audit 등을 이유로 불시 출입하면 안됨)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하도급업체의 근무시간이나 인력투입수준 등을 통제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 견적요청 과정에서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 견적을 요청하면서 경쟁력 있는 견적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는다.

3.11.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3.11.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11.2. 법위반 유형(Don'ts)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사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3.12.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3.12.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3.12.2. 법위반 유형(Don'ts)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12.3. 업무상 유의사항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후 이를 납품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면 안된다.

3.13.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 4)

3.13.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3.13.2. 범위반 유형(Don'ts)

-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민원 처리/산업재해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①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③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④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

-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3.13.3. 업무상 유의사항

일정한 유형의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해야 한다.

3.13.4. 관련사례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

[사실관계]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 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하는 조항” 설정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업무 축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필요 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

구에 따라 특근 및 근무 시간 외 잔업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조항"설정

농협정보시스템은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납품 기한을 변경하거나 계약 진행을 보류하더라도 수급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모든 손상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조항", "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 등을 발견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설정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는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거래단계별 위반 유형

계약체결단계	이행단계	대금 지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부당특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 지급 의무 •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무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4. 위반시 제재

4.1. 개괄

행정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2억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거부: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 조사: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백만원 이하
사법적제재 (공정위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경영간섭/탈법행위 위반 •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 위반 • 3배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기술자료 유용 금지/보복조치 금지 • 원칙적 고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3점) / 양벌규정

4.1.1. 양벌규정

1) 규정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하도급법 제31조).

2) 규정취지

- 양벌규정이란, 법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2.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

-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처분이 있다. 즉,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다만,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대개 검찰이 청구한 금액으로 결정됨).

4.2.1. 벌금

-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① 서면의 사전 발급 및 서류보존규정에 위반한 자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④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⑤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⑥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 ⑦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⑧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⑨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⑪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⑫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⑬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 ①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②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도급법 제30조제3항)

- ① 위반행위 조사 관련 의뢰받은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4.2.2. 과태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개인은 1천만원 이하)

- ①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누락 및 거짓 공시를 한 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자

-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 개인은 5천만원 이하)

-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공시를 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3항, 개인은 5백만원 이하).

-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항에 따른 과태료에 처한다.

- ①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관련 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천만원 이하,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4항)

- ②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원이하, 하도급법 제30조2 제5항)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무시한 자

(100만원이하, 하도급법 제30조2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3.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검찰총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4. 손해배상책임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5. 과징금

(1)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2) 원칙적 부과대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 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범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범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자율 준수노력을 지속적일 한 경우
- ②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범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3) 과징금액 산정 단계

① 1단계: 기본과징금

-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20%~80%, 다만 50% 미만인 부과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 산정기준이 범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정.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 ② 2단계: 조정과징금(행위자요소, 고의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 1차 조정: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감
(과거 위반행위 횟수, 피해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라 20%이내에서 가중)
 - 2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1차 조정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감)
 - *감경: 위반행위 자진 시정(10~50%), 조사협조(10~20%)
 - *가중: 보복조치(20%)
- ③ 3단계: 부과 과징금
 -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시장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6. 하도급 대금 자진 시정시 과징금 미부과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미부과 되며, 다만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하며, 다만, 3년동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는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을 하게 된다(벌점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

5. 하도급거래 관련 Q&A

(1) 하도급 거래란 무엇인가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도급거래란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는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는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 2조 1항)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매출액 3,000억 미만인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16년 1월부터 하도급법 중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두산의 경우 거래하는 상대방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금지급 등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상대방입니다.

(3) 물품수령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령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하도급법이나 시행령 등에 물품수령통지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명, 수량, 인수일자, 인수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4) 발주자(고객사)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도 증액 변경계약해야 하나요?

- 하도급 법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대금이 조정된 경우 원사업자가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0일 이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계약서 등에 “제품 품질기준은 별도 협의”로 기재하고 관행상으로 구두로 검사기준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서면 미발급에 해당하나요?

-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계약서, 사양서, 품질협정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 이와 별도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반품하는 경우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검사기준을 꼭 합의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서면발급을 E-mail이나 ERP 등의 전산 프로그램 상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계약서 등에는 전자서명을 하고 ERP 등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도 적절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호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E-mail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 하도급 대금 감액 동의서를 E-mail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등

(7) 긴급작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면을 발급해야 하나요?

- 긴급작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작업 착수 전에 서면(2.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참조)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아직 금액이나 용역 등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결정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및 확정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확정이 될 경우 즉시 해당 서면을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8) 정식발주 부서가 아닌 생산팀 등에서 구두로 발주하는 것을 막고자 당사 구매부서에서 정식 발주절차를 통해서 발주하지 않은 주문(현업 부서 등의 주문)에 대해서는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하도급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 해당 조항은 하도급법상에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발주를 하는 부서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사의 다른 부서에서 발주형태로 주문이 일어난 경우에도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의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9) 목적물 수령일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 목적물 수령일은 하도급 형태에 따라서 인정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 일반적인 제품/상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우리 회사의 지정된 장소로 납품된 날이 기준입니다. (검사에 합격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서는 안됩니다.)
- 용역 중 역무의 공급은 역무가 종료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적성과물의 경우 검사 요청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있습니다.

(10)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늦게 받았습시다. 우리도 늦게 주면 안되나요?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발주자로부터 당사가 대금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당사의 대금지급의무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지만, 하도급법의 목적을 생각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60일 만기의 외담대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주말입니다. 월요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여도 됩니다.

(12) 대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월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중입니다. 문제가 없나요?

-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면 가능합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은 목적물 수령일을 기산일로 하여 대금지급 기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거래가 빈번하고, ② 사전에 상호 합의된 경우 월 1회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3) 외상매출담보대출(외담대)는 전자어음에 해당하나요?

- 외상매출담보대출은 어음대체결제 수단입니다.
(현재 ㈜두산은 전자어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4)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외상매출담보대출(이하 외담대) 형태로 지급한 경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은행 등과 상의하여 만기를 조정해서 정상 지급 시점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혹시 지급일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외담대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데 사전에 지급일자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당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및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보증보험료 등을 사유로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급금 지급을 보험증권 제출 시 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16) 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해야만 하며, 해당 조항은 부당특약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7)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예정가가 필요한가요?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출된 사전 예정가가 필요합니다.
- 만약에 사전예정가를 입찰시스템 등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가격을 사유로 유찰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참여업체의 입찰서류 미비 등으로 유찰은 가능합니다.)

(18) 사전 예정가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나요?

- 사전예정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근거/방식의 합리성은 당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장가격 조사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가격에 원재료비 변동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전년대비 5% 인하 등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해당 가격 이하로 입찰가격이 내려오도록 재입찰을 반복하는 것은 부당한 단가인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9)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무조건 부당한 단가인하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예시는 아래 3가지입니다.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다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입찰과정에서 제품의 설계가 변경되어 예정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떤 절차 등이 필요할까요?

- 기존에 진행 중인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특히 입찰 안내에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 입찰로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21) 당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원가절감을 하는 경우 단가를 인하하여도 되나요?

- 사전에 합의서(성과공유 등) 작성하고 당사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절감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의 기여도를 임의로 과대하게 산출하고 그 부분만큼의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원가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원가 절감 효과의 대부분을 당사가 가져가는 형식의 가격 결정은 부당한 단가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2)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A, B, C 사업장에 동일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가 공장별로 다릅니다. 그 중에 단가 높은 2개 업체에게 최저가격 업체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 것도 위법사항인가요?

- 단가인하 3개 업체의 가격 중 최저가격업체를 시장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존업체와 체결한 계약기간, 수량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단가 조정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1개업체만 참여하여 유찰 후 참여 업체를 대상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업체의 입찰 시 제안가는 당사의 예정가 이하였으나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견적을 요청한 결과 추가적으로 인하된 단가를 제출하여 업체의 제시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단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업체에게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되었음을 정확히 통보하고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전제로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을 경우에도 최초 입찰가격이 당사 예정가보다 낮았다면 최초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4) 당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의 국제 시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해당 비율만큼의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협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무조건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협의 하에 단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25)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 중인데 원사업자 매출 확대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입찰 시 2위 업체에게 현재 거래업체 수준의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없나요?

-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상자체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기존업체와 협의된 물량은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업체에게도 배분될 물량을 사전에 고지하여 합니다.

(26) 수급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년간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 투입되던 인력들은 고속전자들로서 임금수준이 높았으나, 최근 투입된 인력들은 파견직들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요?

-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투입된 인력의 수준이나, 규모 등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과업'이나 '산출물'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물인 '과업'이나 '산출물'의 변경이 없다면 부당한대금결정이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7)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비 인상을 사유로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재료비가 인상된 영향만큼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비의 인상을 사유로 단가협상을 요청을 받은 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만 하지만 단가인상을 꼭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로 인해 단가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변동이 없어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있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률이나 다른 원부재료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8) 수급사업자의 명확한 귀책으로 인한 Claim 발생시 하도급 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Claim 등으로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받아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통보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추후 합의과정, 상계대금 산출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29)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반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반품통지서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필수 서면이며 발급시에 반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0) 당사의 생산일정이 변경되어 해당 제품을 3개월 정도 후에 생산에 투입하게 되어 공간문제로 반품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입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당한 반품에 해당하나요

- 당사의 생산일정의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반품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한 반품(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 반품한 제품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고를 진행하여 협력사에 피해가 없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하도급법의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31) 고객사의 주문이 변경되어 생산이 2주 정도 조정되어야 해서 발주를 취소하고 재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하나요?

- 당사의 생산일정의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발주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판매 부진 등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만 정당한 위탁(발주) 취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Claim으로 인한 보상청구시 청구 금액 등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Claim 형태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청구 금액은 물품대금과 품질불량 등으로 발생한 직접비용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만약에 당사의 판매가격 및 기회비용 손실, 혹은 징벌적인 보상 (손실액의 2배, 혹은 3배)을 청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이나, 부당특약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 기술자료에 유용의 범위에 해외 자회사에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외 자회사도 별도 법인이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기술자료의 유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4) 수급사업자가 당사에 공급하는 제품 생산 시 투입할 인력을 당사가 지정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인력을 "정규직"이나, "경력OO년 이상 숙련자", "업계에서 인정되는 고급인력"등으로 최초 입찰요청이나, 견적이 요청시부터 명시하였다면 해당인력의 투입 혹은 활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력을 지정하여 교체를 요청하거나, 추가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5) 품질문제가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품질 점검 등을 목적으로 당사가 불시에 수급사업자의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하도급법 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 품질 점검 등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하도급법 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 하지만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당사가 임의로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적용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6) 협력사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기술자료에 해당하면 보내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경우라면 협력사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규정에는 협력사에 기술자료 여부에 대한 공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에 해당하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협의한 후 협력사 자료요청서를 발급하여 서면으로 요청 하여야만 합니다.

(37)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품질개선 대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협력사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 하여야만 하나요?

- 품질개선대책서 등의 자료에는 협력사의 설비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가 많으므로 협력사 자료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End-User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요청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4절 대규모유통업법

1. 개요

1.1. 대규모유통업법의 기본개념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면세점)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조)

[대규모유통업법의 특성]

1)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제23조 1항 4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제23조 1항 5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거래상 지위가 약한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2) 하도급법의 우선 적용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한다.

1.1.1.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조

목적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SSM 포함), 복합쇼핑몰, TV홈쇼핑, 편의점, 대형 서점, 온라인 쇼핑물사업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 적용대상: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입에 사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대규모 유통업 거래의 규제내용	의무사항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교부, 서류보존 • 상품판매대금 지급 •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금지사항 (11개)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상품의 반품 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거래 강요금지 •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불이익 등 금지 • 보복조치 금지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상품의 반품 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거래 강요금지 •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불이익 등 금지 • 보복조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상품의 반품 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거래 강요금지 •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불이익 등 금지 • 보복조치 금지 		
납품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위법행위 협조거부 			

1.2. 적용 범위

- 대규모유통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요건(연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영업에 사용)을 충족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인적적용범위에 해당된다.
-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 ①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②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1.2.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 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유통시장의 구조
 - 2) 소비자의 소비실태
 -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 4)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1.3. (주)두산과 대규모유통업법

(주)두산은 두타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와 관련된 부분만 적용을 받습니다.

- 1) 제 6조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2) 제 8조 :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 3) 제 11조 :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
- 4) 제 12조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5) 제 13조 :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 6) 제 14조 :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 7) 제 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8) 제 15조의 2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 9) 제 16조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10) 제 17조 :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 11) 제 18조 : 보복조치의 금지

1.4. 위반시 제재

<p>행정적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범위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 시정권고 • 과징금부과: 범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개정) 관련납품대금 또는 관련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음 -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30% ~ 70%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p>행정질서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하: 허위자료 제출, 불출석등 - 2억원 이하: 조사거부 - 단, 대규모모유통업자의 임원·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자료 미 제출 등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 조사 거부·방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 서류 보관 의무 위반: 1천만 원 이하 •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100만 원 이하
<p>사법적제재 (공정위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거래, 거래방해 - 정보제공 요구/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 제한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시정명령 불이행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2.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2.1. 서면발급의무 및 계약추정제도

2.1.1. 주요내용

- 대규모유통사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사항(이하 "법정 계약사항"이라 한다)이 명시되고 당사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서면 계약서 미교부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납품할 상품의 제조 및 주문 뿐만 아니라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의 준비행위 조차도 일체 요구할 수 없으므로 상품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경우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 및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서면 계약서 미 교부 시 납품업자 등이 계약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15일 이내에 그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통지한 계약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납품업자 등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락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인의 회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전 서면교부의무를 준수하고, 서면 미교부시는 관리자를 미리 지정해 두어 회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2. 업무상 유의사항

(1)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당사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작성한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계약체결 직후)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사가 계약서면에 명시해야 할 법정 계약사항(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당사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방송 횟수 및 일시
7.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부담 여부 및 조건
8.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9.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2) 서면 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납품업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 확인 및 계약체결 추정제도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4항 내지 제7항, 시행령 제3, 4조)

- 계약서 미교부시 납품업자 등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의 계약존재를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면 계약서 미교부시 납품업자 등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하다.

- 납품업자 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만 한다.

- ① 계약일자,
- ② 상품의 종류 및 수량
-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④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위 확인 요청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는 15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고, 회신 미발송시 납품업자 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 위 통지 및 회신은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것이어야 하며, 위 통지 및 회신은 내용 증명우편 등으로 당사자의 주소로 하여야 한다.

2.1.3. 범위반 사항(Don'ts)

-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장위치·면적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2.1.4. 관련사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사례(㈜한화갤러리아 및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건> (2015유통3344, 2016유통2298, 의결 제207-202호)>

[사실관계]

㈜한화갤러리아 및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피심인)는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단기행사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우수 고객 초대, 패션쇼,

콘서트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약정함과 동시에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2. 경영정보제공요구 금지

2.2.1. 주요내용

- 부당한 경영정보(일정한 경영정보)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사전 서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적인 강요행위 없이 '요구'만으로도 위법).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 다른 사업자에 대한 납품가격, 납품 물량, 납품 시기, 납품 방법, 대금지급 시기, 대금지급 방법, 반품 조건 등, 납품 거래에 관한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 포함)에 관한 정보(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2호)도 해당된다.
- 다른 사업자에 대한 임차 면적, 임대료, 임대료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임차 위치,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 등, 매장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납품·판매하는 상품 원가 정보,
 - ②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 ③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행하는 판촉행사 관련 정보
 - ④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사용하는 상품 관련 전산망 접속 정보

2.2.2.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요구행위 자체의 부당성(불공정성)이 인정된다.
- 원칙적으로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2.2.3. 경영정보 제공요청시 준수사항

(1) 형식,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

- 경영정보의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2항).

- 해당 서면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3항)

①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 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범위

-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3)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한 서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거래 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2.2.4. 업무상 유의사항

-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해당 납품업자 등과 다른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2.3.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2.3.1. 주요내용

- 당사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하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이라 한다)에 대해 입점업체와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입점업체에게 해당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 약정은 당사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당사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2항).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당사와 납품업자 사이의 예상 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와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비율 또는 액수

2.3.2. 판매촉진비용의 범위

- 판매촉진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하며(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8호),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2.3.3. 업무상 유의사항

(1) 부담비율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단, 납품업자 등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제4항).

(2) 행사 실시 전에 비용 부담 등을 약정해야만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 가능 약정의 내용은 행사명칭, 성격, 기간·판매할 상품의 품목 및 예상수량·소요 예상 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예상이익의 비율·비용 부담비율 및 액수이다.

- 약정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약정과 동시에 교부해야 한다.
-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비용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추정하며, 납품업자 등의 비용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분담비율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매촉진행사

-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실무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판매촉진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정기·부정기·계절/특수시즌 행사(가격할인 행사, 사은품 증정 행사 등)
 - : 대대적 광고·홍보 행사 (TV/라디오·전단지·리플렛·팸플릿 등 제작 배포 행사 등)
 - : 기타의 소비자 이익 제공 행사 (1+1행사·추가 액세서리 제공 행사·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행사·무이자할부 행사·배송비 지원 행사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해야 한다.
 - ①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성격, 기간,
 - ②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 ④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 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4) 예외

- 납품업자 등이 ①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②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규모유통법 제11조 제5항). 즉,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고, 서면약정 및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즉,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 측으로 하여금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 분담도 가능할 수 있다.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두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1)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일 것, (2)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일 것. 단, 공정위 실무상, 위 예외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5) 자발적 판촉행사 및/또는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 자발성 요건 : 납품업체가 개별적으로 행사품목과 행사기간을 먼저 제한하였는지 여부
- 차별성 있는 판촉행사
 - ① 신상품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 ② 특정 납품업자 등이 스스로 기획한 행사
 - ③ 특정 상품 판매에 특화된 사은품 증정행사
 - ④ 행사전용모델 또는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행사

2.3.4. 관련사례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에 있어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 미약정 사례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4유통1993,2015유통3346, 의결 제2017-198호)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신의 일부 점포에서 '줄세우기 행사'라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어 실시되는 판매촉진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상품권 지급 경품 행사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례>

[사실관계]

피심인은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된 비용 총 19,000천 원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이 행한 '상품권 지급행사'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 및 판매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2.4.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2.4.1. 주요내용

- 거래형태(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 수탁거래) 및 소매업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단계와 그 이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종업원 기타 고용된 인력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예외 없음).
-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 받은 상품관련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외적 허용: 특정 사유 + 서면약정 +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 종사).
-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단, 예외적인 요건 (실체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4.2. 제한적 허용

(1) 실체적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업원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 부담할 경우
-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경우

-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경우

(2) 절차적 요건

-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다음과 같은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
- 파견조건의 전부에 대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만 함.
- 약정 시 약정된 파견조건이 명확하여야 함.

(3) 파견 종업원의 업무 범위

- 파견 받은 종업원 등은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파견 종업원은 당해 상품에 관하여만 종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업무를 하도록 하면 위법한 종업원 사용에 해당된다.
- 그러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정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파견된 종업원 등을 자신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나 여타 업무 또는 다른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법 위반 유형(Don'ts)

- 파견된 종업원을 현금 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
- 파견된 종업원에 통로, 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함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 장려금·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 납품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을 통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진열대·시식대의 설치 비용, 샘플·시식용 상품비용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구두·유선·이메일로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에게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행위
- 대규모유통업자 차원의 바겐세일 등 판촉행사 기간에 행사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 행사 요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파견 받는 경우
- 단기 판촉행사 또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서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구두·이메일·파견요청 문서 등으로 종업원 등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 받는 행위
-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내역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받지 않은 경우
-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마련되었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약정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파견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

- 파견조건 약정서면 또는 종업원 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존하고 폐기하는 행위
- 전자서면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의 서명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는 행위

2.5.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2.5.1. 주요내용

경제적 이익의 제공 요구는 거래형태(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 수탁거래) 및 소매업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한다.

2.5.2. 업무상 유의사항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가 모두 규제 대상이며,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 물품 등 사실상 대부분의 이익이 포함된다.
- 정당한 사유를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 ① 납품업자 등에게는 반대 급부가 전혀 없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 ② 경제적 이익 제공의 반대 급부가 관련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사항이거나(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사 브랜드에 불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 ③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반대 급부 사이의 형평성이 어긋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6. 불이익 (보복행위 등) 금지

2.6.1. 주요내용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2.6.2. 불이익금지 성립요건

- ①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 ② 납품업자 등의 관계 기관 신고,
- ③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또는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 제한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2.6.3. 업무상 유의사항

-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행위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8조 위반시 행위자와 법인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 계약조건 변경, 납품·매장 임차 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마찰 발생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엄밀하게 작성·보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5절 대리점법

1. 개요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12.22 제정, 2016.12.23. 시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 동법의 목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기본사항

(1) 대리점 거래의 정의 및 적용제외 사유

-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법 적용 제외 사유

- 공급업자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400억원~1,500억원이하, 자산총액액 5,000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규모 기업집단 미 소속 기업이어야 한다.
 - : 대리점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제외된다.
- 거래상 지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다.
 - :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 격차
 - :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

- 절대적 우월성이 아닌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
- 시장의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을 모두 고려
-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판단]

- 유통시장 구조/소비실태/사업능력 격차/거래의존도/상품 특성 등
- 문제가 되는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1.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대리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예: 구속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 지위 남용 이외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된다

1.4.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

- ① 분쟁조정당사자가 협의회에 신청서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단, 공정위 조사중인 사건을 제외) 하거나, 공정위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 작성 또는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종료 시 다시 진행된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은 다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③ 분쟁당사자간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며, 분쟁조정당사자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 불성립시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가 개시된다.

2. 대리점법 상세내용

2.1.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2.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2.2.1. 개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2.2. 규제의 이유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임직원의 임면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3. 법 위반 유형

- ①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하는 행위
- ②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 ③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④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⑤ 대리점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는 행위
- ⑥ 대리점업자의 동의 없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 ⑦ 대리점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⑧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⑨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⑩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⑪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 ⑫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⑬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 ⑭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⑮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 ⑯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2.4. 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 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2013서경1385, 공정위의결 2013-165호)>

[사실관계]

남양유업은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 시스템(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수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정명령을 하면서,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 금지,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 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 대금 결제 시 제품 주문량·공급량 및 대금 산정 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진열 판촉사원 임금 부담 시 부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125억원) 및 주요 임직원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동안 26개 품목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로 불이익을 준 사례(2013전사1457, 공정위 의결 2015-001호)>

[사실관계]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밀어내기 품목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 할당량을 정하여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의 주문량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식품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2억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2.3.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2.3.1. 개요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리점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이익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3.2. 범위반 유형

- ① 대리점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②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③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④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⑤ 자기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⑥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⑦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⑧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그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⑨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⑩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3.3. 관련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 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2013서경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사실관계]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된 진열 판촉사원의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고, 진열 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진열 상태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 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시켰다.

[공정위 판단]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 금지,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 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2.4.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2.4.1. 주요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시 말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상품의 경우는 판매량 할당 확보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대리점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성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4.2. 범위반 유형

- ①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② 대리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점에 지급하게 하는 경우
- ③ 판촉차원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 장려금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이 확보되고 그 장려금 지급율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경우
- ④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예) 자사제품 판매비율을 전년도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 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⑥ 판매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⑦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판매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판매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⑧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⑨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⑩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⑪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 ⑫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 ⑬ 대리점과 상품 또는 용역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이자율 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보다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2.4.3. 관련 사례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사례(2012서경 2437, 공정위 의결 2015-123호)>

[사실관계]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판매목표강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2.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2.5.1. 주요내용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거래상지위남용의 가장 빈발한 행위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 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5.2. 법 위반 유형

- 1)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 2)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3)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 4) 계약서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5) 대리점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6)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7)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8)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9)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시점에 소유권 판매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에 정상결제 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10)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11)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2)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3) 불량 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 14)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5)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 16)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 하도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17)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18)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19)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0)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 예시]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납품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기존의 매출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 수수료율 등을 일방적으로

-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반품조건부로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하자 등 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취소된 상품을 대리점이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5.3. 관련사례

<제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2010서경2754, 의결 2013-098호)>

[사실관계]

국순당은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을 축소하고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 지역제한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부과하였다.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준 사례> (2010서경2754, 의결 2013-098호)

[사실관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특약점 점주 또는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2.6. 경영활동 간섭 금지

2.6.1. 주요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처의 경영에 대한 관여는 제조업자의 판매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함 이외에 경영지도, 채권보전, 마케팅 정보의 수집 등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행해지며,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결과 거래처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나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될 경우는 위반이 된다.

2.6.2. 법 위반 유형

-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2.6.3. 관련사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한 사례 (2012서총3503, 의결 2015-346호)>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영업직원 채용에 필요한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거나 영업직원의 해고를 강요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경영간섭)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2.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2.7.1. 주요 내용

- 공급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2. 범위반 유형

-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보복조치금지

2.8.1.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2.8.2. 법 위반 유형

- 대리점이 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 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대리점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조건이나 결제조건 또는 지원 등을 다른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제재사항

3.1.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구입강제), 대리점제7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또는 제12조(보복조치)를 위반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과징금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범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

- ①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을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기준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미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③ 법 위반금 산정하기 곤경에서는 위위 중대성의 별 부과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액을
란한
반행
정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6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1. 공정위 조사절차

1.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개 국(경쟁정책국/기업집단감시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1.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 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직권 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1.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 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배당 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 심사하며, 사전심사 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1.4. 사건번호·사건 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 일본의 심판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이 때, 피심인에게는 심사 보고서 중 "심사관조치의견"을 뺀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다.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공정위 심판절차

2.1. 심판 주체

-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하며,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

2.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 보좌를 받으며, 전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한다.

2.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5일 전까지 통지하며,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된다.(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2.4.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법위반사실 공표명령'·'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단,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2.5.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한다.

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3.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2, 제 42 조 ①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2, 제 42 조 ②항)
소관사항	법규 등의 제·개정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 37 조의 3)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집행정지의 결정 과태료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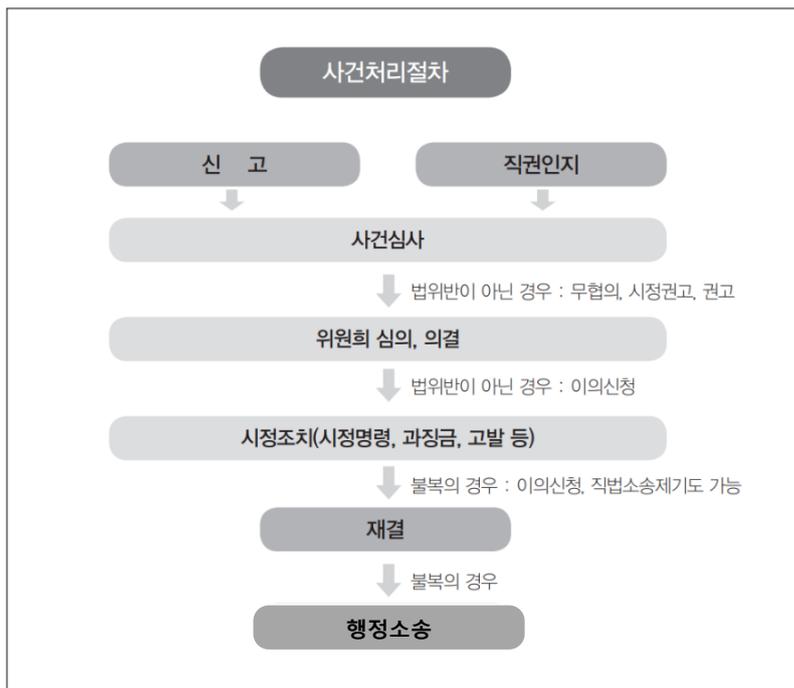
1) 심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말한다.
- 심사관
 -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된다.
- 피심인
 -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이의신청인
 -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3.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사건절차 흐름도



3.2.1. 인지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9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며,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신고 접수 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

3.2.2. 조사·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한다.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한다.

3.2.3. 심의·의결 단계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 하는 과정이다(공정거래법 제43조).

3.2.4.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서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3.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3.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3.3.1. 사전 의견청취절차 제도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3.3.2. 심의 속개제

-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 만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3.3. 심의분리제

-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 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3.3.4. 출석 시차제

-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

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 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 절차 응용

3.4. 불복절차

3.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의2).

3.4.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5. 심사 청구 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3.6. 동의명령제도

-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이력

최초 제정 : 2004년 09월

1차 개정 : 2007년 12월

2차 개정 : 2011년 06월

3차 개정 : 2013년 12월

4차 개정 : 2015년 06월

5차 개정 : 2017년 12월

6차 개정 : 2020년 11월

7차 개정 : 2024년 04월

담당부서 : (주)두산 사업부문 컴플라이언스팀